

보도자료

2010년 6월 30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기획재정담당관 조경식과장(1610) 나. 주파수할당추진팀 정창림팀장(2340)
다. 전파기반팀 최우혁팀장(2230) 라.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과장(2430)
마.,바. 뉴미디어정책과 조영훈과장(2450)

2010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첨부1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 과 『201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안』 을 심의하여 의결함

<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별	'10예산 (A)	'11년도		증감 ('10년대비)	
			지출한도	요구안(B)	B-A	%
세입(안)	< 합 계 >	6,166	-	5,886	△280	△4.5
	■ 일반회계	3,504	-	2,974	△530	△15.1
	■ 방송발전기금	2,662	-	2,912	250	9.4
세출(안)	< 합 계 >	5,983	6,020	6,092	109	1.8
	■ 예산	소 계	3,321	3,180	△141	△4.3
		(일반회계)	3,256	3,067	△189	△5.8
		(특회계)	65	113	48	73.8
	■ 방송발전기금 (사업비)	2,031	1,929	1,929	△102	△5.0
		* 총규모(내부거래 포함)	(2,662)	(2,912)	(250)	(9.4)
	※ 정보통신진흥기금	<3,155>	-	<3,004>*	<△151>	<△4.8>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1년도 3,004억원중 방통위 단독사업 규모는 1,254억원('10년 1,322억원), 지경부와 공동사업 규모는 1,750억원('10년 1,833억원)임

나.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이동통신(셀룰러, PCS), TRS 등 9개 서비스 용도로 총 25개 사업자에게 심사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11.6월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주파수 회수 또는 할당방법의 변경 등 전파법상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한 결과,
- KT가 보유한 1.8GHz 대역의 주파수 20MHz폭 회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법을 대가할당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의결함

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이동통신·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대비,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펌토셀 기지국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펌토셀 : 100조분의 1(10^{-15})을 의미하는 펌토(femto)와 이동전화 통화 가능지역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 펌토만큼 촘촘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의미

라.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 신규로 지상파 방송허가를 신청한 4개 방송사업자의 4개 신규 라디오방송국(FM)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신 청 인	신청일자	신청 방송국명
(재)극동방송	'09. 10. 30	극동대구 FM방송국
(재)원음방송	'09. 10. 30	원음대구 FM방송국
도로교통공단	'09. 11. 11	교통울산 FM방송국
(재)CBS	'09. 12. 07	CBS부산음악FM방송국

마. 2010년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 3 참조)

- 2010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및 티유미디어(주)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사 업 자 명	대 표 자	방송구역	사업의 종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이몽룡	전국	일반 위성방송사업(SkyLife)
티유미디어(주)	박병근	전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바. 2010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4 참조)

- 2010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 등 6개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사 업 자 명	대 표 자	방송구역
안동문화방송(주)	이윤철	대구, 경상북도
(주)KNN	이만수	부산, 울산, 경상남도
(주)광주방송	박흥석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주)대구방송	이노수	대구, 경상북도
(주)강원민방	박용수	강원도
(주)제주방송	김양수	제주도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방향

가. 2011년도 세입 예산안

- 그 동안의 세입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11년도 5,886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10년도 6,166억원보다 4.5% 감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 '11년 세입은 2,974억원으로 '10년대비 530억원(Δ 15.1%) 감액
 - 주 세입원인 전파사용료의 감소와 홈네트워크 용자사업의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상환 완료됨에 따라 '10년 대비 530억원 감액 편성
- (방송발전기금) '11년 세입은 2,912억원으로 '10년대비 250억원(9.4%) 증액
 - 보도전문채널 추가와 홈쇼핑·종합유선방송사의 매출액 증가 예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10년 대비 250억원 증액 편성

나. 2011년도 세출 예산안

- 총 6,092억원으로 편성하여 '10년 대비(5,983억원) 1.8% 증액된 규모임
- (기본 편성 방향) ▲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 ▲ 신성장동력 확충 ▲ 경제활성화 기여 등에 중점 투자하고,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
- (일반회계)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등에 총 3,067억원을 편성 ('10년 3,256억원 대비 5.8% 감소)
 -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으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7개 사업(73억원)을 신규로 추진
 - 우주전파연구센터 구축(31억원 증, 75→106억원),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지원(8억원 증, 41→49억원) 등 총 16개 사업은 증액 (89억원 증, 503→592억원)

- 구조조정을 통해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구축 (202억원 감, 385→183억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6억원 감, 16→10억원), 전파자원 총조사(10억원 감, 42→32억원) 등 총 30개 사업은 감액 (257억원 감, 1,398→1,141억원)
- 전파간섭실험 및 분석환경 구축(28억원), 광대역통합망 기반 구축(14억원) 등은 사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 (4개사업 178억원 감)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파연구소의 지방이전(서울→나주) 준비를 위한 청사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48억원 증, 65→113억원)
-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촉진, 방송진흥 기반구축, 방송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등에 총 2,912억원을 편성 ('10년 2,662억원 대비 9.4% 증가)
 - 양방향 방송서비스활성화 기반조성(22억원), 방송편성 기반조성(10억원) 등 총 3개 사업(42억원)을 신규로 추진
 - 고화질 3DTV방송시스템 구축(21억원 증, 20→41억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시청자 지원(20억원 증, 46→66억원),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31억원 증, 79→110억원), 방송통신 전문교육강화(27억원 증, 15→42억원) 등 총 8개 사업은 증액 (124억원 증, 338→462억원),
 - 디지털전환 시범사업(40억원 감, 90→50억원),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13억원 감, 269→256억원) 등 총 16개 사업은 감액 (150억원 감, 1,320→1,170억원)
 - 디지털라디오 비교실험방송(18억원), 지상파DTV 분산주파수망 구축(22억원) 등은 사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 (4개사업 117억원 감)

다. 향후 추진일정

- 2011년도 예산안(기금포함) 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6.30일)
- 2011년도 예산안(기금포함)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7~9월)
- 201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제출 (10. 2일 예정)
- 2011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10월 ~ 12월초)

〈첨부2〉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계획(안)

가. 심사대상

신 청 인	신청일자	신청 방송국명
(재)극동방송	'09. 10. 30	극동대구 FM방송국
(재)원음방송	'09. 10. 30	원음대구 FM방송국
도로교통공단	'09. 11. 11	교통울산 FM방송국
(재)CBS	'09. 12. 07	CBS부산음악FM방송국

나. 허가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성방안 : 방송통신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구 분	분 야	비 고
위 원 장	방송통신위원 · 외부전문가	심사총괄
심사위원	방송 분야 2인	관련학과 교수 및 관련분야 종사자
	경영 · 회계 분야 1인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1인	관련학과 교수 및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 분야 1인	관련학과 교수 및 관련분야 종사자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간사

다. 심사기준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한정된 주파수하에서의 신규 허가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심사에 중요하게 반영
-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능력 -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 해당 지역 신규 방송국의 필요성 및 지역 특성 구현
 - 방송목적(종교 · 교통)의 구현계획 등

심 사 항 목	배 점 (총1천점)	평가지표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	계량·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50	계량·비계량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00	비계량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	계량·비계량
5. 재정능력	250	계량·비계량
6. 기술적 능력	100	계량·비계량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50	비계량
8.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	감점	계량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라. 허가여부 결정 기준

-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신청인에 대하여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의결

마. 추진계획

- '10. 7월 : 시청자 의견청취 및 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0. 7~8월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첨부3〉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

가. 재허가 대상 : 2개 사업자

사 업 자 명	대 표 자	방송구역	사업의 종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이몽룡	전국	일반 위성방송사업(SkyLife)
티유미디어(주)	박병근	전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

구 분	전 문 분 야	비 고
심사위원(9)	심사위원장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평가위원 (1)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방송·미디어 분야 (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 (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 분야 (1)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 (1)	방송기술관련 학과 교수
	시청자·소비자 분야 (1)	시청자·소비자 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1)	뉴미디어정책과장

다.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지표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계 량	400
2. 방송의 공적 책임 · 공공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비계량	1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50
4.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75(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75(100)
6.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50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비계량	75
8. 시청자 권익보호	비계량	75
9.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 위반 사례	계 량	감점
10. 기타 재허가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비계량	50
합 계		1,000

-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 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요소 포함. 특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 제5조와 6조를 반영하여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
- ※ ()은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배점으로, 지역적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곤란한 이동매체이므로 관련 평가배점은 낮추고, 경영 효율화 관련 평가배점은 강화

라.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마. 추진계획

- '10. 6~8월 : 신청서 접수, 시청자 의견 접수
- '10. 10월 :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0. 11월 : 재허가 의결

〈첨부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

가. 재허가 대상 : 6개 사업자

사 업 자 명	대 표 자	방송구역
안동문화방송(주)	이 윤 철	대구, 경상북도
(주)KNN	이 만 수	부산, 울산, 경상남도
(주)광주방송	박 흥 석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주)대구방송	이 노 수	대구, 경상북도
(주)강원민방	박 용 수	강원도
(주)제주방송	김 양 수	제주도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8인으로 구성

구 분	전 문 분 야	비 고
심사위원(8)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 (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 분야(1)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 (1)	방송기술관련 학과 교수
	시청자·소비자 분야(1)	시청자·소비자 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뉴미디어정책과장

다.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지표	배 점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비계량	15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100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5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200
5. 재정적 능력	비계량	150
6. 기술적 능력	비계량	150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비계량	100
8. 시청자 권익보호	비계량	50
9.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 위반 사례	계 량	감점
10. 기타 허가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비계량	50
합 계		1,000

-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 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요소 포함. 특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 제5조와 6조를 반영하여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
- ※ 지역DMB 난시청 지역 조기해소를 위한 사업자 의지를 중점 평가하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4번) 및 시설투자 실적·계획(6번)에 높은 배점을 부여

라.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 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마. 추진계획

- '10. 6~8월 : 신청서 접수, 시청자 의견 접수
- '10. 9월 :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0. 10월 : 재허가 의결